



보건복지부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
보 (수정)

1. 관련

ㄱ.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33호, 2017.7.25)

ㄴ. 2017아12006 집행정지 :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 결정 (2017.8.16.)

ㄷ. 보험약제과-5024(2017.8.18.)호 :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고시 집행정지 통보

2. 보험약제과-5024(2017.8.18.)호로 알려드린 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” 문서의 다음과 같은 부분이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처리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.

수정 내용	수정 전	수정 후
붙임 엑셀 'g'열 제목'	조정 전 상한금액 ⇒	고시금액
붙임 엑셀 'h'열 제목'	조정 후 상한금액 ⇒	집행정지 인용 후 금액
본문 '3의 내용'	조정 전 상한금액이 유지됨 ⇒	집행정지 인용 후 금액이 유지됨

3. 위와 같이 붙임의 별지목록은 동아에스티 소송 사건(2017구합72898)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 인용 후 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.

붙임 : 집행정지 품목 1부. 끝.

